

제2597호
2018. 09. 19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 전화: 3396-4952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18-98호 :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

● 공 고

제2018-666호 :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
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98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9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16	2018.09.19.	건물철거
2	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30-15	2018.09.19.	건물말소
3	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0길 35-14	2018.09.19.	건물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18-666호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9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2017년 자치법규 정비과제(법제처 확정) 통보에 따른 정비 과제를 수용하고 다변화하는 문화예술 요구의 충족을 위하여 임원 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임원에 관한 자격 변경 (제7조제3항)
 - “공연예술분야”의 전문가 ⇒ “문화예술분야”의 전문가
- 법률의 위임없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규정 삭제(제15조 삭제)
 - ※ 제15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사용,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3. 의견제출

-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문화관광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여관동, 서울 중구청), 문의전화 : 3396-4606, FAX: 3396-8621, 전자우편: int111@junggu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2.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공연예술분야”를 “문화예술분야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사장은 공연예술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.</p> <p>④~⑤ (생략)</p> <p>제15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구 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 사용,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7조(임원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, ----- 문화예술분야 -----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